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  
10-1조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8월 2일

청 원 인

성 명 : 김종훈, 박미정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두산아파트
	성명 : 김종훈, 박미정
건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10-1조 추가수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2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김종훈 외 14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제 14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lt;출입국관리법 10조 개정안&gt;입니다.</p> <p>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 관한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수 등의 전문 학위(E1,2,3)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공사장에서 일하는 비전문 취업자(E-9)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문 학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전문 취업자들은 보통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러 온 경우가 많아서 각자의 자녀들과 교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전문 취업자들의 자녀 역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그들이 한국으로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합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제10-1조(체류자격) 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p> <p>①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법적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p>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에 비전문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액투자자 혹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는 방문 거주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아동권리보장에 앞장서지만 비전문 취업,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 자녀의 경우는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는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전문 취업 입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 2항[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이행하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추가수정안을 제시합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제10-1조(체류자격)를 신설한다.

### 제10-1조(체류자격)

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①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법적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3. 기대효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함으로써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동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신설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b>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b>법무부령으로 정한다</b> .	제10-1조(체류자격) <b>법무부령으로 정한 비전문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자녀에 한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 자녀의 거주권은 부모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b> ①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법적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